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50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 안규백·김병주·오세희

박지원 · 허성무 · 김원이

박상혁 • 한준호 • 박홍근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됨에 따라, 선출된 문민 권력에 반하는 군부 쿠데타뿐만 아니라, 선출된 문민 권력의 위헌적 명령에 의해 군이 동원되는 친위 쿠데타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명자의 명령 복종의 의무와 발령자의 법규에 반하는 명령 금지에 관한 의무만 있는 반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헌법 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위헌·위법적 명령을 구분할 분별력을 함양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있도록 함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률 제 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1. 명령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본연의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범위 밖의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
- ③ 군인이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 발령자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하나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명령 발령자의 상관
-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군인권보호관
- 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군인이 제3항에 따라 명령 복종 거부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44조, 제45조 및 명령의 불복종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명령이 제2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생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명령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
				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본연의 직무와 관계가 없거
				나 권한 범위 밖의 사항인 것
				이 명백한 경우
<u><신 설></u>				③ 군인이 제2항에 따라 명령
				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
				<u> 령</u> 발령자의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 하나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명령 발령자의 상관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군인권보호관
				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
				의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 가</u>
<u> <신 설></u>				④ 군인이 제3항에 따라 명령

복종 거부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44조, 제45조 및 명령의 불복종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명령이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